

현대 법학계의 정보인권 연구동향

명 재 진*, 이 한 태**

요약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정보의 효율적인 사용과 어느 곳에서든지 필요한 정보를 상시 사용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라는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였다. 지난 20년간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인권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한 관점과 이론이 제시되었다. 정보인권은 우선 개인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인권,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접근권, 알 권리로 유형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인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정보인권을 유형화하고, 지난 연구들의 시대적 특성과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지난 연구논문들과 학위논문 등 200개의 성과물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체계 있는 정보인권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정보인에 관한 보다 실효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정보인권, 자기정보통제권, 사생활권, 알 권리

A Review of Research Trends in Human Rights to Information in Contemporary Korean Jurisprudence

Jae-Jin Myung, Han-Tae Lee

Abstract With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era, the need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has increased rapidly. Theoretical answers to this problem in jurisprudence has been pursued in various ways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types of human rights to information and provide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by analyzing existing research materials. About 200 materials, including theses and dissertations produced from 1988 to the present have been collected and analysed.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this study for the systematization of information rights are presented. I hop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uture studies about information rights in jurisprudence.

Keywords: right to information, right of self-determination, human dignity, privacy

2011년 3월 9일 접수, 2011년 3월 10일 심사, 2011년 3월 28일 게재확정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onn@cnu.ac.kr)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시간강사(idloi@naver.com)

I.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정보사회로 불리는 정보의 가치가 높고 정보의 생산이 산업계의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정보혁명이 시작된 이후 현대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한 상호 접속된 컴퓨터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보사회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정보사회는 이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교차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에 의해 정보질서가 형성되고 구축되는 정보국가로 나타나고 있다(김상겸 외, 2008). 정보사회 및 정보국가의 등장으로 허위 및 위험 정보에 대한 규율과 정보에 대한 안전을 통한 정보의 보호문제와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정보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문제, 즉, 이러한 외관상 모순되는 두 가지 목적이 상호 상충하면서 조화를 찾아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하였다.

헌법학을 중심으로 한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정보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민의 권리로서 정보인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정보사회에 있어서 위와 같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여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연구결과는 외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제안되었고, 우리 사회의 정보화 속도가 다른 국가보다 뒤지지 않은 관계로 이론구성에 있어서 외국에서의 논의가 곧바로 수입되어 학계에 새로운 정보인권들이 신속하게 제시되고 평가받았다.

1980년대 후반기에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문제에 치중한 정보사생활권이 먼저 등장하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호의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정보화시대에 있어 정보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조건이 되므로 법학계는 공권력작용에 의한 개인정보침해를 개인의 인격권침해로 보는

이론구성이 등장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모든 개인정보를 개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결정권)이 제안되어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정보접근권과 자신의 개인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정보인권으로 법학계에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보인권의 유형은 그 형태에서 다양성을 가지나 정보화 시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라는 공통적 성격을 가진다.

현대법학에 있어 정보인권 관련 주요 쟁점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권을 동원하여 새롭게 등장한 정보화시대의 인권을 포섭하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전통적 인권으로 부족한 경우 새로운 정보인권들이 요구되어 헌법상의 인권조문 이외에 이론적으로 신생적 정보인권을 창설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학계에서는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의 고전적 기본권을 동원하여 정보사회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알 권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같은 새로운 정보인권을 창설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논문은 현대 법학계에서 이루어진 개인의 정보인권에 대한 규범적·처방전 접근방법(Normative and Prescriptive Approach)을 통한 지난 20년의 연구를 200개의 논문으로 분석하여 정보인권의 발전과정과 그 유형을 분류하고, 정보인권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범주화를 시도한다. 또한 통계분석을 통해 정보인권의 유형별 연구수와 논문종류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정보인권(기본권)의 의의

1. 개념

정보인권은 최근 들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제4

세대 인권분야¹⁾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정보인권에 대해서는 이를 보는 시각과 핵심가치 영역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인권을 보는 가장 기본적 시각은 정보인권을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는 시각에서 시작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고, 정보인권에 대한 논의의 마지막도 헌법적 관점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인바, 정보인권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개념정의 도출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인권을 정의함에 있어서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 조항으로부터 “정보의 자유”와 “정보 프라이버시”라는 정보인권의 두 가지 개념적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정보인권을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실현하기 위한 질서체계 중 하나인 정보질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의해 확인·선언되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정보질서를 구성하는 정보의 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며, 그 수단적 차원으로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를 향유하고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인권이란 헌법상 정보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의 자유”(공적 정보의 자유)와 “정보 프라이버시”(사적 정보의 보호)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게 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인호, 2009). 즉, 정보인권은 헌법상의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는 곧 헌법상 보장된 기존의 인권 개념이 정보화라는 시대적 특성에 따라 확대·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하우영, 2003).

2.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정보인권

정보인권과 관련되는 헌법적 기본권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 등의 자유권이 거론 될 수 있으나, 이보다는 자율적인 삶의 형성과 관련된 인격권, 정보의 남용에 대한 방지와 관련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같은 기본권이 직접적 정보인권과 관련성이 크다(장영수, 1999). 게다가 각각의 이슈와 사안별로 직·간접적으로 정보인권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헌법의 거의 모든 기본권과 정보인권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이는 현행 헌법에서 기본권 중 정보인권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선언하고 있지 않은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정보인권 보장의 법적 근거로서 항상 해석적 판단여지가 생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권이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과 같이 정보인권에서는 논의가 진전되었으나 헌법체계에서는 아직 개별적 기본권으로 정립되지 않은 권리와 개별적 기본권 간의 경합이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단순하게 경합되지 않는 상황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개별적 기본권에 해석을 의존하기보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는 국민주권주의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상위 가치개념으로부터 직접 법적 근거 및 정당성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성낙인, 2004).

이처럼 정보인권의 내용과 구성이 헌법의 기본권 체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보인권에 대한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더해 급속하게 진전되는 정보화 사회를 반영하여 정보인권의 내용과 구성은 더욱 새롭고 복잡해지는데 반해, 헌법적

1) 정보인권을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 발전단계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르면 인류의 문명 및 공동체 건설의 핵심은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정보인권의 핵심이라 보고 현재의 정보인권은 4세대 인권을 구성하는데, 전통적인 자유권과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던 1세대 인권에서부터 인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던 2세대 인권,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1986년의 발전권 등 집합적 권리를 강조하던 3세대 인권을 거쳐 현대 정보화 사회 혹은 디지털 사회에서 인류 문명 발달의 핵심으로서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정보인권을 주장한다(Mathias Klauq, et al., 2005).

기본권 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실과 정보인권, 법체계 간의 간극이 더욱 커지게 될 수 있다. 사실, 현대의 인권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와 모습이 급속히 변화하는 반면, 우리헌법은 경성적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괴리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의 정보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이들을 연계하는 하위법제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인권과 법 사이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현실과 정보인권 간에도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사회 구성원인 시민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인권이 보다 현실성을 지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최홍석, 2009).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벽을 개헌이나 입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학계의 정보인권에 대한 연구 성과물들이 법과 현실의 괴리나 법의 부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개헌이나 입법의 필요성 못지않게 정보인권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인권에 대한 학계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정보인권 분야의 나아갈 바를 모색해 보는 것도 기본권보장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3.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인권의 중요성

정보화 사회란, 정보의 대량 생산, 유통, 소비에 의해 특징되는 사회. 탈공업 사회의 특징적 상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생겨났으며,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체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물자를 생산 주체로 하는 사회에서 지식 정보를 생산 주체로 하는 사회로,

컴퓨터를 활용한 시스템 중심의 사회로 라는 경향이 그 내용이다. 물질 에너지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정보의 역할이 중시되는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하며 그것에 도달하는 과정을 정보화라고 한다.²⁾ 컴퓨터가 일으킨 정보혁명을 계기로 시작된 새로운 인류 사회에서는 물론 물질과 에너지도 역시 인류생활을 지배하지만, 특히 정보가 인류생활을 지배하게 되는데 바로 이처럼 정보가 인류생활을 지배하는 사회가 곧 정보화 사회라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유형의 물건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보다도,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의 '지식' 또는 '정보'의 생산·유통이 중심이 되며, 정보가치도 점점 높아진다.³⁾

이러한 정보화 사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보사회는 정보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사회이다. 정보사회에서는 개인 생활을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의 제반 사회생활에서 정보 의존도가 커지는 사회이다. 둘째, 정보사회는 컴퓨터 및 전자통신 기술의 결합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능해지는 사회이다. 셋째, 정보사회는 경제 활동의 중심이 상품의 생산에서 정보나 서비스, 지식의 생산으로 옮겨지는 사회이다. 즉, 정보산업이 구조적으로 증대되는 사회이다. 넷째, 정보통신의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회이다. 다섯째, 정보사회는 물질이나 에너지 이상으로 정보 자체가 중요한 자원이 되고, 정보의 가치 생산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사회, 즉, 인간의 지적 창조력이 가장 중요한 사회이다(안동근 외, 1999).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조건들은 역사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영위(營爲)하여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에 대한 통제력이다. 정보인권을 4세대 인권이라 지칭하는 것 역시, 현대사회에서는

2)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202&docId=14826>

3)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609&docId=10573>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인권의 강조점이 달라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뉴미디어와 컴퓨터가 결합하여 엄청난 양의 정보수집과 분배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미래상에 대하여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생산과 관리의 효율성제고, 여가시간의 창조적 노동으로의 전환, 다품종·소량생산으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의 확대, 다양한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을 통한 개성신장과 자기실현, 중앙집권적 사회구조의 분권화·다원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 후자에 따르면 자동화에 따른 대량실업문제와 노동의 비인간화, 정보폭등으로 인한 주제적 판단 내지 창조적 사고의 상실, 정보독점·정보통제·정보조작의 가능성과 그에 따르는 권력의 집중화·사회적 불평등의 심화·국제적 종속관계의 심화 등의 위험성, 사생활 침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화 사회는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정보화 사회에서 그리고 그 이행과정에서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극소화하기 위한 헌법이론적·헌법정책적 대응책의 모색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논의에 핵심이 정보인권에 관한 문제다. 즉, 정보인권은 정보가 수집·가공·유통·소비·분배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 얻어진 정보의 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하지 않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및 기업은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 또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정보를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부당한 개인정보의 수집수집·가공·유통·소비·분배활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기정보통제권과 같은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정보인권에서 강조되게 된다. 또한 이들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거나 선별적·차별적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정보화 사회 내에서 개인의 삶의 조건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접근권 역시 정보인권을 구성하게 된다. 정보화 사회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공간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Dan Hunter, 2003; Andrew D. Murray, 2003). 이 새로운 공간은 인터넷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보편화 및 기술발전으로 힘입어 한때 무한히 확장이 가능한 자유롭고 미개척지인 세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Andrew D. Murray, 2003). 그러나 이 공간은 새로운 정보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정보의 가치창출활동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만들어 내어 정보인권상의 정보 접근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공간에서는 익명을 이용한 모욕, 비난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도 만들어 내게 되었다. 이외에도 정보화 사회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독창적인 노력의 산물로 창출된 정보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최홍석, 2009).

Ⅲ. 정보인권의 제한과 한계

우리 헌법에는 각각의 정보인권내지는 정보기본권에 대하여 개별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국가에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제37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인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독일기본법은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도덕률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역시 제37조 제2항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기본권도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이 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제한할 사유보다 기본권 존중의 필요성이 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본권제한을 위한 입법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고, 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제한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제한이 의도하는 사회적 이익을衡量하여 양자 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하는 비례의 원칙, 즉,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제한의 경우에도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침해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제한의 한계 사유들이 존재한다. 정보인권 역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이러한 사유들로 인한 제한과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과 한계에 대한 연구는 정보인권의 보장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정보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혹은 공공복리라는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대공, 방첩을 위한 수사 및 신원조사 등 검·경찰, 국가정보원, 헌병,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이 하는 활동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의 활동으로는 치안 확보를 위한 검찰이나 경찰범죄수사 및 전과관리, 계좌추적, 신원조치 등의 활동과 일반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 주민등록 및 각종 등록제도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공공복리를 위한 활동의 차원으로 각종 의료정보에 대한 관리 및 복지혜택을 위한 조사, 교육을 위한 기본적 정보의 공유, 조세 확보를 위한 조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보인권의 제한 시에도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적용

되며,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또한 그 법률은 명확성과 일반성을 요구받는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수많은 법률들에서 정보인권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집동의권 및 이용통제권을 계약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 및 요금정산 그리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있어서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통보받을 권리와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도 모두 법률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기본권제한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례원칙에 따른 판단을 말하며, 이는 일종의 실질적 절차로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 부분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법률에 의해 정보인권을 제한하더라도 이 비례원칙에 따라서 판단해 봤을 때, 그에 부합해야만 그것은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제한이 될 수 있다.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모두 충족시키더라도 이를 제한할 경우에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의 법률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정보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되므로 위헌이 된다. 또한 국가 및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대립할 경우 이를 어떻게 비교衡量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평가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기본권보장주의를 충족시킬만한 원칙이라고 신뢰한다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의 가능성은 존재할 것이다.

IV. 정보인권의 연구동향 분석

1. 분석의 대상

정보인권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인권의 개념을 확정지어야 하는 데, 이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보인권의 개념을 헌법상 정보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적 정보의 보호'와 '공적 정보의 자유'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게 되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 정보사회에서의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으로 세분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접근권(엑세스권),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을 기본 틀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두는 취지는 정보인권의 영향력이 사적 정보인지 공적 정보인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고, 그 배경을 이루는 이론체계가 다르므로 이러한 방법론을 따르고자 한다. 또한 시대적 범위를 확정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보인권에 관한 논의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초창기부터 최근까지의 연구들을 시대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법학분야를 공법관계분야와 사법관계분야, 형사법분야로 세분하여 각 분야별 연구실적에 대한 분석과 정보인권에 관한 연구물들의 발간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연구실적물들에 대한 풀을 마련해야 하는 바, 정보인권에 대한 연구물들에 대하여 초기부터 현재까지 각 학회지, 국회도서관, 중앙도서관, 포털사이트 등 조사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내에서 발간된 연구결과물들을 총 망라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대상으로 수집된 것들의 개수가 200편이다. 물론 인권정보에 관한 국내의 연구 결과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분석의 대상으로 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여년에 걸친

연구결과물 200편 정도라면 정보인권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충분하리라 여겨진다.

2. 시대에 따른 연구동향

1) 1세대 - 1980년대(1988~1990)

우리나라에서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인권내지는 기본권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본격적인 논의는 1988년 당시 서울대학교의 김철수 교수의 연구에서 시작되었고, 정보인권에 대한 연구의 주체가 되었던 곳은 법학계가 아닌 정보통신 연구원이나 체신부였으며, 주로 정보인권 전반에 대한 헌법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것들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으며, 아직까지 '정보인권'이나 '정보기본권'이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고 있다.

이 시대의 주 관심사 및 쟁점은 개인의 사생활권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의 정보수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으며,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을 동원해 사적 정보의 비밀을 수호하고자 하였다(김철수, 1988).

2) 2세대 - 1990년대 (1991~2000)

1980년대와 비교하여 가장 크게 두각을 보이는 면은 비로소 법학계의 학술지인 법학연구(한국법학회), 공법학연구(한국비교공법학회) 및 각 대학 연구소의 저널들에서 정보와 인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외에 인터넷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들이 시작되면서 주로 국제법이나 외국법의 사례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년에 제정되면서 그 입법방향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정보인권의 발전 및 쟁점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개인이 접근하고 공개를 청구할

〈표 1〉 정보인권에 관한 시대별 연구 실적

구 분	1980's (~1990) 1세대	1990's (1991~2000) 2세대	2000's (2001~2010) 3세대	합 계
연구 건수	5/200	20/200	175/200	200
비 율	2.5%	10%	87.5%	100%

수 있는 정보권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전의 정보인권이 소극적 방어권에 치중하였다면, 90년대의 정보인권의 특징은 적극적인 정보청구권인 알 권리가 중심에 서게 된다.

3) 3세대 - 2000년대 (2001~2010)

2000년대에 들어 개인용 PC와 휴대전화가 보급이 보편화 되어 초고도화된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사회전반에서 인권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보인권에 대한 법학계의 연구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정보인권에 대한 체계화 및 구체화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부와 유비쿼터스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한 연구결과물들이 눈에 띈다. 정보기본권관련 논문의 내용들이 세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연구내용의 단위가 정보기본권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는 각각의 개별 정보인권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정보사회에서의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접근권(액세스권),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등 세분화하여 다루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노인과 같은 소수자들의 정보인권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렇게 분야와 대상별로 세분화되는 연구취지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세분화의 정도도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기술과 법의 영역을 접목한 학제적 연구가 시작된 것도 큰 특징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으로 인해 본격적인 정보화시대를 이룩해 나갔고, 이에 대해 법학계에서는 이전의 정보인권만으로는 한층 더 변화된 정보사회의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어,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권인 개인정보통제권(자기결정권)을 창출해 내기에 이른다. 또한 기존의 정보인권이 담당한 독자적인 영역의 특수성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이전의 사생활권과 알 권리, 그리고 정보접근권과의 혼용된 용어사용도 나타나게 되자,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시도하게 된다(권건보, 2004).

3. 정보인권 유형별 분류

1) 정보인권의 구체화

우리 헌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으로 '정보인권' 내지는 '정보 기본권'이라는 명문의 표현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 들어 중요성이 더해지는 정보인권의 개념을 헌법의 어느 곳에서 도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하고,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어, 정보인권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권리라는 견해가 있다. 또한 정보인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정보활동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헌법이 보장하는 전통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

에 규정된 자유권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자유권은 천부적·초국가적 권리이므로 실정법적 근거의 유무와 상관없이 포괄적 권리로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를 감안한다면, 굳이 양자의 견해를 대립시켜가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논의의 진행을 위해서는 정보인권의 유형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 바, 이는 앞서 서술한 헌법적 차원의 개념에서 도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인권을 헌법상 정보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의 자유”(공적 정보의 자유)와 “정보 프라이버시”(사적 정보의 보호)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게 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보인권의 유형을 사적 정보의 보호 및 공적 정보의 자유라는 분류기준으로 2분하고,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 정보사회에서의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을 제시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접근권(엑세스권),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정보인권에 대한 유형별로 각각의 세부적 정보인권들이 법학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 정보인권의 구체적 유형

(1) 정보통신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 : 사적 정보의 보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보화 사회에 들어와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통신네트워크의 발전에 의해서 전 세계 이용자들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통신 인프라의 혁명인 인터넷의 폭발적 확산은 가상공간에서 정보를 생성, 수집, 유포, 이용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행위는 현실세계의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일탈행위가 가상공간 자체를 위협하는 사태를 유발한다. 즉, 통신네트워크 망에 부정침입(해킹), 타인의 ID의 부정이용, 전자상거래의 부정거래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이 심각한 프라이버시권의 침범이라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시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지침(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2호, 2008.5.19)⁴⁾상 개인정보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즉, 개인정보는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의 내적 비밀사항, 체력이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의 신체사항,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정당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경력사항,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의 경제사항,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의 신분사항에 해당하는 개인의 정신, 재산, 사회적 지위와 신분 등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나 주관적인 데이터에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불법적 취득 및 활용, 정보통신망에 대한 도·감청을 통한 통신비밀침해의 위험과 함께, 민간부문에서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에 의한 정보수집, 무제한적인 복제와 악용이 상업적 차원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법이익의 발생규모도 막대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주로 상업적 목적의 스팸메일이 수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발송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2호, 2008.5.19)의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1호, 2009.8.7)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3호에 의해 2011년 1월 5일 폐지되었다.

되면서 가상공간에 대한 개인의 통제와 지배영역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개인은 새로운 생활공간에서 마저도 자기의사결정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통신의 안전성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보보안권이라는 개념이 제기되어 보안을 위한 기술적·절차적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동시에, 정보의 속성이 부단히 변동하면서 야기되는 정보프라이버시의 헌법상 체계적 지위를 고려한 개별적인 인권을 헌법의 정보기본권의 목록으로 구성하려는 법학적 견지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강동욱, 1999).

(2) 정보사회에서의 인격권 : 사적 정보의 보호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통신의 안정성과 사생활의 비밀보장이라는 문제이외의 또 다른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이 문제되는 바, 인터넷상의 상대방에 대한 모욕과 비방, 게재(掲載) 등을 통한 인격권 침해가 그것이다. 근자에 들어 안티사이트들이 난무하며 연예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합성사진을 뿌리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의 형태로 많은 인권침해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져 일상화 되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인격권이란 넓은 의미로는 인격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모든 자유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 사생활에 대한 보호, 정신적 자유 및 정치적·경제적 자유의 보호가 모두 인격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의미의 인격권은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넓은 의미의 인격권 중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문화된 것들을 제외한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등과 사생활의 보호와 같이 개인의 인격 보호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만을 좁은 의미의 인격권으로 지칭한다. 즉, 언론의 보도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전파 등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인격권의 침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연구들이 정보화 사회의 인권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왔기는 하나 그 피해의 심각성이나 보편화를 이유로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하다.

또한,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갈등이 대두되기도 한다. 좁은 의미의 인격권을 전제로 하였을 때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와 인격권의 충돌을 이야기한다.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등의 정보인권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이를 통한 정보 습득의 보장을 주장하나, 다른 쪽에서는 무분별한 보도나 인터넷 댓글 등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격권의 보호를 강조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통적 관심사에 비해 연구자들의 관심의 폭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창범, 2004).

(3) 자기정보통제권(정보제공권 포함) : 사적 정보의 보호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맞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행정기관의 정보의 수집과 이에 대한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국가는 사회적 복지국가라는 헌법의 이념 하에 행정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적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행정목적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와 관련한 사생활보호라는 새로운 차원의 헌법적 문제가 관심사로 제기되었다. 즉,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정보처리의 자동화, 정보파일의 결합은 행정목적의 효율성을 이유로 여러 기관이 쉽게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개인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무한대로 집적, 이용,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복지행정을 위한 효율성을 이유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낳게 됨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자기정보통제권이라 함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3년의 인구조사판결(BVerfGE 65, 1)에서 “정보적 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라고 명명하였다. 독일에서 이 개념은 ‘정보조사·취급의 형태, 정보의 내용, 정보처리의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정보를 조사·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그 범위 및 목적에 대하여 그 정보의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능’을 말한다(정태호, 2000). 개인정보자기통제관리권, 개인정보자기지배권, 개인정보관리권 또는 개인정보자기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으로 표현된다.

자기정보통제권의 이론적·실정법적 근거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과 가치를 통하여 보장된다는 견해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내용 중에 하나로 자기정보통제권을 이해하는 견해,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종합, 혹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이에 비하여 대법원판례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사생활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자기정보통제권을 도출해 내고,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상의 독자적인 새로운 기본권으로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의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결 2005.5.26. 99헌마51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자기정보통제권의 헌법상 근거에 개별 기본권 규정들뿐만 아니라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각종 헌법상 기본원리도 포함시켜, 열거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의 하나라는 논거이다.

이와 같이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총체적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려는 학계의 연구는 여타의 다른 정보인권분야와 비교했을 때, 독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일환, 2008a).

(4) 정보접근권(액세스권) : 공적 정보의 자유

액세스권이라는 영미법상의 표현에서 시작되는 접근권은 전통적으로 매스미디어 접근권(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스미디어에 접근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매스미디어를 이용한다는 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의견이나 주장을 표명하여 그것을 널리 전파시킨다는 것이다. 이 경우의 액세스권이란 매스미디어를 객체로 하고 일반 공중을 주체로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과 국가사이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국민과 언론기관과의 관계라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액세스권은 흔히 두 가지로 설명된다. 광의의 액세스권이란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매스미디어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국민에게 민주적 여론형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지위를 강화하는 적극적 의의를 갖는다. 반면, 협의의 액세스권은 자신과 관계되는 보도에 대하여 해명 내지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소극적 의의를 갖는다(계희열, 2007). 우리 법제는 협의의 액세스권으로 반론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접근권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액세스권, 즉, 접근권은 언론기관과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학자들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액세스권의 일종으로서 정보접근권은 그 개념을 매스미디어에 국한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들과 논의될 소지를 앗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공적 정보 이용에 있어서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개인들 간의 평등한 정보접근의 보장이다. 현대 사회민주주의의 특징은 정부가 개인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주체임과 동시에 이를 위해 수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알 권리의 보장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적 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여론형성과 여론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행정에 대한 정보접근권은 국민 스스로의 기본권 전반을 인지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주요한 전제조건이 되며, 정보에 대한 국가권력이 집중되고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보접근권은 그 의미와 가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알 권리의 하나의 내용인 정보공개청구권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이기

도 하다.

인터넷 이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그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이른바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 등에 대해 정보접근기회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연구 및 규범정립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접근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정보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액세스권 등에서 도출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보인권이라는 총합적 개념에서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헌법규정을 신설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개별권리의 유형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사회에서의 기본적 권리를 천명하도록 정보인권에 대한 헌법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정보격차해소정책의 목표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근거로 삼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권리구제를 필수적 입법사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 설정에 있어 최상위규범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황주성 외, 2004).

(5)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 공적 정보의 자유

일반적으로 알 권리라 함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의사형성 및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성낙인, 2010). 즉, 알 권리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자유를 의미한다. 정보의 자유라고도 한다(계희열, 2007). 이러한 알 권리를 통한 정보의 습득은 국민의 정치적 참여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민주적인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도 한다. 따라서 알 권리는 국민주권의 실질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알 권리에 대하여 독일 기본법 제1조 제5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할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알 권리에 대한 명문의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우리헌법에서는 의사의 자유로운 형성과 표명, 이를 수용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알 권리는 우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헌법적인 한계 때문에 알 권리의 개념은 다의적인 것이 되어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서 정보 접근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알 권리라 함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고, 듣고, 읽을 자유와 권리일 뿐만 아니라 정보의 공개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공개청구권이라고 하며,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으로서, 행정절차법상의 문서열람, 복사청구권과 같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으로 구별될 수 있다. 현행법상 정보공개에 관하여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과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모두가 인정되는 법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정보의 양적 거대화, 정보의 독점, 정보유통의 불균형 및 이에 따르는 정보유통에 수반되는 인권침해 문제 등이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도의 정보산업사회에서는 누가 어떤 양질의 정보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국가간·기업간·개인간의 승패가 좌우된다. 즉, 정보독점이 이루어지고 정보공개가 억제를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됨에 따라, 정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내지는 이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킴에 따라 끝내는 이것이 소득격차로 연결되며, 정보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정보관리에 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독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일반국민은 피치자로서의 역할만 하게 됨으로써 자유로운 주체로써 또는 주권자로서 자율적인 판단에 입각한 생활을 해 나가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로서 알 권리는 현대에서 점차 그 중요성과 독자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김중양, 2003).

3) 분석결과

정보인권에 관한 연구는 초반에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을 법학의 장에 끌어들이면서 그 전반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인권에 대한 포괄적 연구는 근래에 와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을 체계화하고 구체화 하려는 노력에 집중된다.

이러한 정보인권을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체계화한다는 전제하에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연구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정보인권에 관한 연구의 초반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들이며, 여타의 기본권들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설명을 시작하듯이 공권력에 의한 정보의 관리와 통제가 가장 빈번하고 위험한 요소를 지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연구 다음으로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연구 건수가 그 뒤를 잇는 바,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가장밀접한 자기정보통제

〈표 2〉 정보인권에 관한 유형별 연구 실적

구 분	세부구분	연구 건수		비 율	
정보인권 일반	정보인권에 관한 포괄적 연구	27		13.5%	
사적 정보의 보호	정보통신의 안전성과 개인정보보호	13	139	6.5%	69.5%
	정보사회에서의 인격권	7		3.5%	
	자기정보통제권	119		59.5%	
공적 정보의 자유	정보접근권(엑세스권)	8	34	4%	17%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26			
합 계	•	200		100%	

와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판단되며, 과거에 비해 민주화가 성숙됨에 따라 국가정책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그 다음을 잇는데 이 분야는 정보통신의 기술적 분야와 개인정보에 대한 분야가 접목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법학분야에서의 논의는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에서 2005년부터 기술과 법에 관한 전문학술지인 LAW & TECHNOLOGY가 발간되면서 연구 빈도가 높아가고 있다.

‘정보접근권(엑세스권)’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정보의 접근의 평등성 지향에 관한 연구들을 볼 수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장애인과 노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연구들이 법학분야뿐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정보사회에서의 인격권’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주로 형법적 차원의 제재 문제로 다루는 연구는 많으나 이를 순수하게 인권적 차원에서 연구하려는 노력은 저조함을 볼 수 있다.

4. 법학 분야별 분류

인권정보에 관한 연구는 헌법을 중심으로한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물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이는 정부와 개인간의 공법상 법률관계 분야에 대한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반면 민사법 분야나 형사법 분야에서도 약간의 연구물들이 있기는 하나 공법관계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법관계분야의 정보인권 분야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업과 개인 간의 민사법적 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바, 기업에서 취급하는 고객으로서 개인의 신용정보문제나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그에 대한 통제에 관한 것들과 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들을 볼 수 있고, 정보인권에 대한 침해가 거대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 같이 사법관계에서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므로 앞으로 사법관계에서의 정보인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법분야에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제재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표 3〉 정보인권에 관한 법학 분야별 연구실적

구 분	공법관계분야	사법관계분야	형사법분야	합 계
연구 건수	181	13	6	200
비 율	90.5%	6.5%	3%	100%

〈표 4〉 정보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간유형별 실적

구 분	학술지	박사학위논문	정부기관 연구 보고서	단행본	합 계
연구 건수	181	11	6	2	200
비 율	90.5%	5.5%	3%	1%	100%

5. 발간유형

초기(1세대)에는 주로 관보나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연구보고를 통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학계의 학술지를 중심으로 논의의 장이 바뀌었다. 따라서 정보인권연구가 시작된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연구동향을 보면, 주로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보고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역할은 법학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정보인권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정보인권분야의 단행본 저술은 경제성이 없어서 그런지 저조한 편이다.

V. 결론 및 제언

정보인권에 관한 학계의 200개 연구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간의 정보사회 내의 학자들의 정보인권에 관한 관심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정보인권은 초기의 소극적인 정보침해에 대한 사생활보호라는 의미에서, 오늘날 개인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통제와 청구를 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 전환되었다고 평가된다.

앞서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보인권을 헌법상 “정보의 자유”(공적 정보의 자유)와 “정보 프라이버시”(사적 정보의 보호)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게 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 유형을 사적 정보의 보호 및 공적 정보의 자유라는 분류기준으로 2분하는 경우, 전자에 해당

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 정보사회에서의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을 들 수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접근권(액세스권),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는 아직 학계에서 일반론으로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정보인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인권의 논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당시의 논의는 사생활권에 관련된 것에 불과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 정보인권에 관한 중요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국제법이나 외국법의 사례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년에 제정되면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갔다. 2000년에 이르러 정보인권의 세분화가 시도되고 개인정보 보호, 정보사회에서의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접근권(액세스권),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통계에 의할 경우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연구가 가장 빈번하였고, 그 밖에 알 권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정보인권에 관한 연구는 그 특성상 공법분야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에서 정보의 자유를 방어할 이론들이 학계에서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법학계에서의 정보인권연구는 개인이 가지는 정보에 대한 결정권인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심으로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세분화된 정보인권의 역할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향후 체계적인 정보인권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날로 심화되는 정보매체에

대한 국가나 사인의 침해가 증대되고 있어, 정보안전성에 관한 권리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보인권간의 상호 중첩되는 내용에 관한 분명한 정리와 새로운 시대에 변화된 정보환경을 설명하는 신정보인권 창출도 기대된다고 본다.

이러한 정보인권에 대한 뜨거운 연구와 성과가 향후 헌법개정에 영향을 주어 정보인권의 헌법적 명문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강경근 (1995). “정보공개법시안상의 정보공개범위와 그 문제점.” 「인권과 정의」, 221: 8-21.
- 강경근 (200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기본권.” 「아·태공법연구」, 10: 103-123.
- 강경근 (2004). “프라이버시 보호와 진료정보.” 「헌법학연구」, 10(2): 179-220
- 강경근 (2005). “정보보호의 헌법규범적 접근과 전망.” 「공법학연구」, 6(2): 203-223.
- 강경근 (2006a). “전자정부의 헌법적 과제.” 「공법연구」, 35(1): 121-183.
- 강경근 (2006b). “정보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인격성 : 현대의 인권 상황.” 「판례연구」, 19(2): 55-72.
- 강구철 (2005).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 「경제연구」, 17: 69-87.
- 강달천 (2004).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의 개인 정보보호법제.” 「중앙법학」, 6(2): 7-36.
- 강동범 (2001). “전자적 자료의 침해에 대한 처벌과 인권 보장.” 「저스티스」, 34(1): 40-59.
- 강동욱 (1999). “정보통신망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280: 26-46.
- 강성진 (2001). “정보화사회의 인권보장 : 지정토론 요지.” 「저스티스」, 34(1): 62-64.
- 계희열 (2007). 「헌법학(중)」. 서울: 박영사.
- 고덕진 (2003).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18: 136-152.
- 권건보 (2004).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건보 (2005).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서울: 경인문화사.
- 권건보 (2006).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법제연구」, 1(2): 49-72.
- 권건보 (2008). “지문날인제도의 현황과 헌법적 문제점의 검토.” 「세계헌법연구」, 14(1): 39-75.
- 권장준 (2009). “경찰행정법상 경찰의 정보수집활동과 정보적 자기결정권.” 「법학연구」, 25(2): 299-25.
- 권태웅 (2004). “미국의 전자정부법제와 추진전략.” 「법제 통권」, 554: 24-60.
- 권형준 (2004).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10(2): 89-116.
- 권형준 · 이병욱 (2003). “정보통신의 발달과 헌법상의 과제.” 「한일법학」, 22: 85-114.
- 김경화 (2008). “전자감시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로부터의 근로자 권리 보장 방안.” 「고려법학」, 51: 111-146.
- 김광암 (1993).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인권 보장.” 「검찰」, 104: 249-305.
- 김규하 (2008). “프라이버시권의 형성과정의 개관: 미국·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법학논총」, 7: 1-18.
- 김기열 (2008).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적 검토.” 「법제 통권」, 605: 6-35.
- 김배원 (2001). “정보관련 기본권의 독자적·통합적 보장을 위한 시론.” 「헌법학연구」, 7(2): 79-130.
- 김배원 (2006).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헌법개정과 관련한 체계구성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2(4): 199-232.
- 김백유 (2005). “인터넷과 기본권 :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6(1): 259-289.
- 김상겸 (2007). “전자정부에 있어서 정보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전자정부법제연구」, 2(2): 1-20.
- 김상겸 (2010). “정보기본권의 체계와 보장에 관한 연구.” 「국제헌법연구」, 16(1): 71-92.
- 김상겸 · 김성준 (2008).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국제헌법연구」, 14(3): 87-116.
- 김상찬 (2002). “영미법상 의료정보에 대한 환자의 액세

- 스권.” 「법과 정책」, 8: 17-32.
- 김상태 (2007). “정보공개소송에 있어서의 법률문제-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성격 및 소송유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4(3): 385-403.
- 김선욱 (1992). “독일연방데이터보호법상의 데이터보호담당관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20조와 관련하여.” 「인권과 정의」, 193: 48-58.
- 김성준 (2009a). “범죄자 DNA정보채취에 대한 헌법적 고찰-“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15(3): 59 - 83.
- 김성준 (2009b). 「헌법상 정보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김수갑 (2006). “건강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미국의 입법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법학연구」, 17(2): 245-285.
- 김승환 (2003). “정보자기결정권.” 「헌법학연구」, 9(3): 149-179.
- 김용섭 (2001).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공법연구」, 29(3): 167-199.
- 김일환 (2001).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9(3): 87-112.
- 김일환 (2003). “정보사회에서 기본권제한개념의 확대 필요성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9(3): 181-208.
- 김일환 (200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부터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헌법상 고찰.” 「공법연구」, 32(4): 113-135.
- 김일환 (2005). “정보사회에서 생체정보의 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344: 23-42.
- 김일환 (2006). “독일의 생체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18(1): 1-23.
- 김일환 (2008a).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정보사회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하여.” 「법학연구」, 3: 5-36.
- 김일환 (2008b).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공법연구」, 37(11): 339-372.
- 김일환 · 장인호 (2009). “나노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서론적 고찰.” 「성균관법학」, 21(2): 27-51.
- 김일환 · 홍석한 (2008). “개인정보 자율규제영역에서 보장국가로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4(4): 135-171.
- 김중양 (2003). 「행정포커스 12호」.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김진경 · 한우석 (2009). “의료정보 이용 및 공개에 관한 법적기준-미국 프라이버시 규칙과 피험자보호 규칙의 검토-.” 「한양법학」, 28: 209-224.
- 김철수 (1988).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 정보화사회와 기본권.” 「체신」, 355: 14-19.
- 김철수 (1988). “정보화사회와 기본권 보호.” 「컴퓨터비전」, 60: 137-143.
- 김철수 · 노규형 (1988). “정보화사회에서의 기본권보호와 정치참여.” 「국회보」, 262: 128-141.
- 김철수 · 노규형 · 엄영석 · 전병재 · 유재천 · 방석현 (1988). 「정보화사회와 민주발전」.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태현 (2003).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김현준 · 탁영남 (2009). “식품소비자의 식품정보액세스의 공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45: 25-48.
- 김형철 (2003). “환경법상 정보공개청구권.” 「사헌법학」, 1: 103-125.
- 김희수 (2007). “형사소송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 정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민주법학」, 34: 327-356.
- 남동현 (2009). “RFID 시스템과 증명책임 전환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재산법연구」, 26(1): 279-322.
- 노기호 (1998). “교육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일본과 미국의 제도 및 판례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27(1): 429-448.
- 노영보 (1991).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와 인권 보장: 사법부 업무 전산화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2」, 4(2): 28-45.
- 명재진 (2008). “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헌법의 세계화.” 「국제헌법연구」, 14(3): 139-168.
- 명재진 (2009). “IT(정보기술) 기본권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헌법논총」, 20: 287-320.
- 박경신 (2009).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헌법학연구」, 15(3): 75-112.
- 박덕수 · 정해상 (200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중심으로.” 「IT미디어법 연구」, 창간호: 163-192.
- 박문석 (2009).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박성호 (2006).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정보공유와

- 인권을 위한 모색. 서울: 현암사.
- 박승호 (2003). "정보의 자유." 「공법연구」, 31(5): 19-45.
- 박영철 (2004). "생체정보의 보호." 「헌법학연구」, 10(4): 305-338.
- 박익환 · 장용근 (2005).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권의 보호." 「국제헌법연구」, 11(2): 87-118.
- 박인수 (2008).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비교연구." 「헌법학연구」, 14(2): 163-196.
- 박정훈 (1998). "기본권 침해 정보질서의 공법적 기본 조건." 「행정법연구」, 2: 258-274.
- 박정훈 (2008). "공익, 인권의 법적 과제: 학교안전정보 시스템구축과 아동인권보호의 법적 과제." 「영남 법학」, 26: 1-45.
- 박중현 (2009). "의료연구에 있어서 개인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미국 HIPAA의 프라이버시 규칙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37: 241-268.
- 박주석 (2010).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에 관한 법적 연구: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박진수 (2008). "정보사회의 인권보장에 관한 고찰: 공공기관의 CCTV 운용과 법제도현황 제논의-법집행 실무에서 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현황-." 「법학연구」, 3(1): 93-105.
- 방준식 (2010).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적 판단." 「한양법학」, 31: 303-322.
- 배금자 (2001). "정보화사회의 인권보장: 지정토론 요지." 「저스티스」, 34(1): 65-75.
- 배대현 (2006). "개인정보보호, 이용에 관한 계약법적 방안 모색." 「상사판례연구」, 19(4): 567-606.
- 백승민 (2001). "정보화사회의 인권보장: 지정토론 요지." 「저스티스」, 34(1): 76-78.
- 백운철 (2002a).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법조」, 51(5): 173-207.
- 백운철 (2002b).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서울: 고시계사.
- 백운철 (2003).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학연구」, 9(3): 209-236.
- 백운철 (2005). "우리나라에서 의료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헌법학연구」, 11(1): 395-442.
- 변재욱 (1991).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인권 보장." 「저스티스」, 24(2): 7-27.
- 서계원 (2005). "정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11: 195-232.
- 서천석 (2003). "인터넷·첨단기술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21: 99-148.
- 설계경 (2005).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19: 277-303.
- 설민수 (2009). "일반인의 재판과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그 제약: 비교법적 접근." 「저스티스」, 111: 5-42.
- 성낙인 (2001). "정보공개법의 시행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학」, 42(3): 47-81.
- 성낙인 (2004). "정보보호와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45(1): 101-142.
- 성낙인 (2010). 「헌법학」. 서울: 법문사.
- 손영수 (2003).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15: 257-298.
- 손태우 (2001).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최근 미국의 동향." 「법학연구」, 42(1): 41-60.
- 신승남 (2009). "미국의 유전자 프라이버시 및 유전자 정보 이용과 관련된 법률 분석 및 맞춤형학에의 시사점." 「법학논집」, 13(2): 145-165.
- 신용호 (2000).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인권 규범: 유엔인권협약(B협약)을 중심으로." 「비교법학」, 1: 162-185.
- 신인석 (2007). "신용정보의 이용 활성화와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신용 위험관리의 현황 분석." 「고려법학」, 48: 513-552.
- 심희기 (2006). "유전자감식의 제문제 ; 유전자정보은행과 프라이버시 이슈들." 「형사정책」, 18(2): 85-105.
- 안동근 · 신동률 · 이은경 · 류지한 (1999). 「정보통신윤리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양만식 (2009). "일본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실현과 전개." 「법학논총」, 33(2): 913-939.
- 연기영 (2005). "일본의 의료정보법제와 개인정보보호." 「중앙법학」, 7(4): 269-297.
- 오상진 (2009). "인터넷 기반의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 보호." 「LAW & TECHNOLOGY」, 5(2): 45-57.
- 원좌현 (1989). 「정보화사회의 특성과 기본권」.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유일상 (2005).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의 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미·영·일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1(3): 445-486.
- 윤석찬 (2006). “직장 내에서 전자우편(e-mail)의 사적 사용과 감청허용 여부.” 「인권과 정의」, 361: 144-165.
- 윤수진 (2006). “U-City구현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 「공법연구」, 35(1): 555-587.
- 윤태영·변용완 (2010). “지능형 도로환경에서의 위치 추적과 프라이버시 보호.” 「경찰법연구」, 8(1): 81-106.
- 이광현 (201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구현·김정순 (2006).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언론과 법」, 5(2): 45-46.
- 이동훈 (2005). “디지털사회에서의 액세스권.” 「헌법학연구」, 11(2): 143-177.
- 이민영 (2006). “CCTV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쟁점.” 「전자정부법제연구」, 1(2): 159-170.
- 이민영 (2007). “공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에 관한 일고찰.” 「전자정부법제연구」, 2(1): 181-203.
- 이민영 (2008). “공공기관의 CCTV 운용과 정보인권 관련논의: 관한 권리침해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3: 107-135.
- 이민영 (2010).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제의 개인정보보호 정합성 연구.” 「외국법제정보」, 38: 173-206.
- 이상돈·전현욱(2006). “정보이용동의: 정보적 자기결정의 새로운 차원.” 「고려법학」, 47: 87-122.
- 이상명 (2007).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주민 등록번호와 지문날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이상명 (2008a).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전자여권.” 「법학논총」, 25(3): 155-176.
- 이상명 (2008b).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36(3): 225-248.
- 이상해 (2006).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 독일과 스위스의 “연방이 보유한 정보에의 접근에 관한 법” 및 “행정의 공개성원칙에 관한 연방법”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5(1): 589-615.
- 이서열 (2008). “정보공개법제의 발전과 향후 개선과제.” 「외법논집」, 30: 393-413.
- 이성환 (2007).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고려법학」, 48: 553-582.
- 이시우 (2002). “정보화사회와 기본권의 변천 :정보의 자유와 독일 법제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8(3): 86-117.
- 이영규 (2008). “개인의료정보침해 시 사법적 구제방안.” 「법학논총」, 25(1): 135-160.
- 이육한 (2009). “국가에 의한 정보제공행위의 기본권심사 구조와 법률유보.” 「공법학연구」, 10(1): 105-132.
- 이인호 (2001). “온라인 프라이버시침해기술과 보호기술의 법적 함축.” 「법학논문집」, 25(2): 53-75.
- 이인호 (2002). “디지털시대의 정보법질서와 정보기본권.” 「법학논문집」, 26(2): 199-257.
- 이인호 (2004). “학생의 정보프라이버시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 NEIS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329: 60-85.
- 이인호 (2007). “한국 정보법의 발전동향-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5(4): 177-219.
- 이인호 (2008).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정보를 둘러싼 권력과 자유의 긴장과 조화.” 「법학연구」, 3: 37-92.
- 이인호 (2009a). “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사법」, 8: 35-89.
- 이인호 (2009b). 「정보인권의 개념과 헌법적 보장체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자성 (2007).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및 구성 내용에 관한 고찰.” 「전자정부법제연구」, 2(1): 111-136.
- 이재용 (2009).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전화, e-mail, fax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9(2): 359-389.
- 이정념 (2009).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념 (2010). “정보프라이버시 갈등과 유전자정보권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22(2): 305-325.
- 이종상 (1996). “헌법상 기본권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사생활비밀보호제도.” 「경남법학」, 11: 237-261.
- 이준일 (2003).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고려법학」, 41: 223-248.
- 이창범 (2004). “정보기술 발달과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연구」, 32(5): 219-245.
- 이창범 (2005).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DRM기술 리엔

- 지니어링.” 「LAW & TECHNOLOGY」, 1: 39-52.
- 이철호 (2005). “CCTV와 인권.” 「아·태공법연구」, 13: 27-65.
- 이철호 (2006). “RFID와 개인정보 보호.” 「헌법학연구」, 12(3): 435-460.
- 이철환 (2008). “정보공개소송에서의 쟁점.” 「경제연구」, 28(1): 441-467.
- 이희훈 (200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 10(1): 273-305.
- 임규철 (2002).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8(3): 231-260.
- 임규철 (2003a).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비교연구: 미국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1(5): 71-90.
- 임규철 (2003b).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3년 8월 20일의 입법예고 안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9(3): 237-261.
- 임규철 (2003c). “NEIS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결정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323: 111-121.
- 임규철 (2004).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호적법.” 「인권과 정의」, 330: 160-173.
- 임규철 (2007a). “개인정보의 국외이송에 대한 법적 통제 의 필요성: 한·미 FTA의 금융신용정보 국외이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365: 159-175.
- 임규철 (2007b). “정보공개제도의 몇 가지 문제.” 「인권과 정의」, 375: 101-126.
- 장영수 (1999). “정보화 시대와 인권, 법.” 「법학논집」, 35: 21-44.
- 장진숙 (2010). 「전자정부구축에 따른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호순 (2002). “정보화 사회의 기본권.” 「언론과 법」, 창간호: 73-95.
- 전영주 (2006).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법학연구」, 23: 521-540.
- 전진한 (2003). “정보공개실태와 발전방향.” 「JURIST」, 390: 20-24.
- 정극원 (2006). “법치국가원리와 개인정보보호.” 「헌법학연구」, 12(1): 193-225.
- 정남휘 (2004). “개인정보보호 법적고찰.” 「이상의」, 439: 16-31.
- 정대관 (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비교형사법연구」, 5(2): 905-928.
- 정덕영 (2009). 「바이오시대의 유전정보관리통제권」.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정상우 (200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소고」.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정상조 (2008). “광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저스티스」, 106: 601-623.
- 정영화 (2002). “생성되고 있는 정보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국제헌법연구」, 7: 403-442.
- 정 완 (2009).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저스티스」, 109: 7-72.
- 정재황 (1995). “사기업의 개인정보취급과 기본권침해 문제.” 「고시계」, 459: 148-159.
- 정재황 (2006). “프랑스법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34(41): 251-286.
- 정준현 (2004).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프라이버시보호.” 「성균관법학」, 16(1): 463-480.
- 정태호 (2000).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독일의 인구조사판결(BVerfGE 65, 1)의 법리분석과 우리의 관련법제에 대한 반성-.” 「법학논총」, 20: 199-245.
- 정필운 (20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이해.” 「전자정부법제연구」, 1: 237-251.
- 정필운 (2010). “공공기관은 자신의 저작권을 근거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헌법학연구」, 16(1): 249-287.
- 정해상 (2006). “개인정보도용의 민사책임.” 「인권과 정의」, 361: 130-143.
- 정현수 (2002). “개정호적법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개정호적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사법」, 9(4): 307-345.
- 정 훈 (2007). “독일 환경정보법상 기록열람청구권-계획 확정절차와 관련하여-.” 「환경법연구」, 29(2-2): 367-390.
- 조규범 (2008).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공법연구」, 37(12): 181-200.
- 조인현 (2009). 「헌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야 건이 저·최환용 역 (2004). “일본에서의 개인정보

- 보호법제의 형성, 현상 및 약간의 논점.” 「공법연구」, 32(5): 247-269.
- 최경진 (2008). “모바일 RFID에 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법학연구」, 1(1): 223-245.
- 최명구 (2008). “채권양도와 개인정보보호.” 「민사법학」, 40: 389-423.
- 최민석 (2007).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직업의 자유.” 「공익과 인권」, 4(1): 319-334.
- 최봉석 (200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리의 범위와 한계.” 「법학논총」, 33(2): 155-193.
- 최상호 (2001).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특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8(1): 1000-1043.
- 최상호 (2005). “쿠키의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계명법학」, 9: 39-72.
- 최인호 (2008). “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 「공법연구」, 36(4): 541-573.
- 최재혁 (2008). 「형사법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구: 사이버공간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환 (1992).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인권과 정의」, 193: 36-47.
- 최종구 (2008). “신용정보법상의 제문제.” 「인권과 정의」, 377: 200-215.
- 최흥석 (2009). 정보인권 관련 법제변화에 따른 시민의식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표성수 (2008). “정보공개법 소정의 예외사유(비공개 정보)에 관한 연구.” 「법조」, 57(7): 5-45.
- 하승수 (2003). “정부의 투명성과 정보공개법의 의미.” 「JURIST」, 390: 16-19.
- 하우영 (2003). “노동정보처리와 정보인권보호.”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13(6): 17-32.
- 한귀현 (2005).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향과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6(2): 81-107.
- 한상훈 (2004).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 「경찰법연구」, 2(1): 202-234.
- 한수웅 (2002). “헌법상의 ‘알 권리’: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법조」, 51(8): 35-73.
- 한위수 (2001). “정보공개청구사건의 재판실무상 제문제.” 「인권과 정의」, 304: 31-60.
- 허성욱 (2008).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인터넷상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문제에 관한 일고: 리니지 II 게임 아이디·비밀번호 노출사건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30: 753-802.
- 홍석한 (2009a).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21(1): 853-872.
- 홍석한 (2009b).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헌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44: 475-498.
- 홍준형 (1995). “정보공개법시안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221: 22-35.
- 황인호 (2003).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 고찰.” 「중앙법학」, 5(3): 73-101.
- 황주성·이민영 (2004). 「차별 없는 정보접근보장을 위한 법제개편방향」.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황찬현 (2001).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인터넷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저스티스」, 34(1): 5-39.
- 황창근 (2008).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14(2): 315-344.
- Colette Cuijpers·이재용 (2010). “정보통신기술과 사용자-근로자간의 역학관계-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근로자 감시 및 근로자의 위치추적에 있어서 사업장 내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과 네덜란드의 비교법적 관점의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20(2): 21-44.
- Andrew D. Murray (2003). “Regulation and Rights in Networked Space.” *Journal of Law and Society*, 30(2): 187-216.
- Dan Hunter (2003). “Cyberspace as Place and the Tragedy of the DigitalAnticommons.” *California Law Review*, 91(2): 439-519.
- Mathias Klanq & Andrew Murray (2005).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Routledge Cavendish: New York.